



한국시설안전공단

수신 서울특별시장

(경유)

제목 설계도서 제출 협조 요청(서울특별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 1. 17.][법률 제11928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18. 1. 18. 법 개정에 따라, 2014. 1. 17. ~2018. 1. 17. 준공된 시설물에 적용)
3. 이에 시설물관리대장이 등록된 시설물 중에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시설물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공자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독촉 바랍니다. 만일, 시공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도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상기 법조항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설계도서가 일부분만 제출된 시설물은, 모든 항목이 제출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설계도서가 FMS(<http://www.fms.or.kr>)에 제출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계도서 미제출 시설물현황(2018. 7. 31. 기준) 1부. 끝.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상근대리

양병식

부장

08/17
김민수

시설물통합정보전결 08/17
센터장 **권철환**

협조자

시행 국가시설관리본부-23725 (2018.08.17.) 접수 하천관리과-11769 (2018.8.17.)
우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1 한국시설안전공단 / <http://www.kistec.or.kr/>
전화 055-771-1937 /전송 055-771-1950 / befirst@kistec.or.kr / 대시민공개